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정 1993. 8.27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3-67호 개정 2005. 5.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3호 개정 2005.11.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27호 개정 2007.12.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34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 개정 2012. 9.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3호 개정 2014. 6.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 2. 「건축법」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 3.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 <삭제 2005.11.4>

- 제5조(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 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4>
- 제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5.11.4>

제 2 장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

- 제7조(창업민원전담부서) ①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 (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군·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4.6.2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보직기간과 인사평정 우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 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창업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공동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 2. 진입도로
- 3.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 ④ <삭제 2005.11.4>
- ⑤ 법 제35조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 다.

제9조 <삭제2005.11.4>

- 제10조(시·군·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시장·군수·구청 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 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군·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5.11.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05.11.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 제15조(일부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

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 ②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24>
- 제16조(조건부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허가 사항의 근거법령 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5.11.4>

-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 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4.6.24>
 -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 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제3절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 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를 승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할지역내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를 선별 허용한다.
 - 1. 동일 시ㆍ읍ㆍ면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는 경우
 - 2. 동일 시·읍·면내에 있는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가 입주신청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
 - 3. 공업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 한 경우
- 제20조(입지가능 용도지역으로 유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창업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창업입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종별로 공업입지가 가능한 다음 각항의 용도지역 내 미개발지로입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공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야 한다.
 - 1. 공업지역 또는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우선적으로 입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 2. 동일 시·읍·면내에 위 1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관리지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창업을 유도하되 동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공장에 한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공업입지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절 부문별 협의요령

- 제21조(농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5>
- 제22조(산지전용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것
 - 2.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 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 제23조(기타사항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 준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 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 터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4.6.24>
 -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 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록 년2 회 이상 무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6조(승인취소 등) ① <삭제 2005.11.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 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 37조제1항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 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 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 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5.11.4>

- ③ <삭제 2005.11.4>
- ④ <삭제 2005.11.4>

제 4 장 보 칙

제29조 <삭제 2005.11.4>

- 제30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군·구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침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 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 장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2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33조(별도 인·허가상의 고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 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34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6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5. 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 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11.4〉

-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31〉

-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9. 26〉

-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6.24〉

-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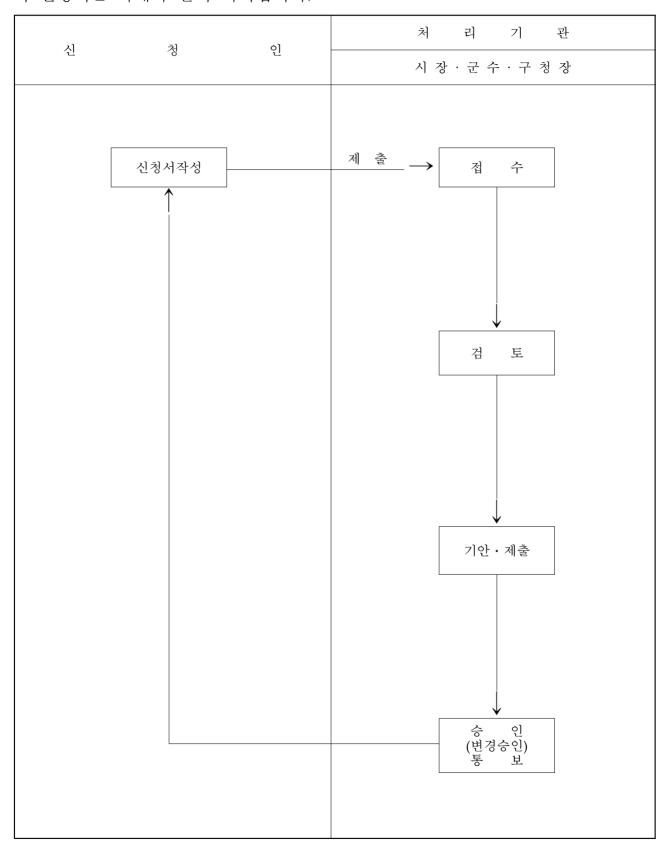
(앞 면)

								(32 2)		
	사업계	획	[□ 승 인] [□ 변경승인]	신	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	루증번호		2		
신	③대 표 자 성	명			④대표자 생] 년월일				
[선 청	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연	월 일				
인	⑦주 (법인은 소재 ²	소 지)			⑧회 사	자 산				
	9대행상담회시	명	(전 ※ 중소기업청에 등		호:) 중소기업상담회서	`		,		
,,	⑩공 장 소 재	지			(전:	화번호:)		
사 업	Ш т	모	대지	m²	⑫건	물		m²		
계 획	⑬업종(분류번	호)			④종 업	원 수				
푁	⑤공사착공예정	일			⑤공사 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따라 위와 같이	사임	넓계획 □승 □변경성	인 을인 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	¹ 청기	상 귀하	,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 3.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28283-09411 민 93. 4 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별지 제1의2호 서식] <2005.2. 승인>										
		• .								j	처리기간
		사 9	겉 :	계획 사	전 협 9	의 	신청서				7 일
	①회 사	명		(주)○○○	00	2	사업자등록	증번호	000-	00-	00010
신	③대표자 성 명			000)	④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청	⑤회 사 형 태			주식회/	\ }	⑥설립년월일			00년	0월	· 0일
인	⑦주 <i>2</i> (법인은	Ն 소재지)		○○시 ○○면○○리 000							
	8전화번호 / 핸드폰:										
사	⑨공장예정 소재지			○○도 ○○군 ○○면 ○○리 0000번지 ^⑩ 부지면 [㎡] 적						m²	
업	⑪지 목				②용도지역						
계	③업종(분류번호)			14생산품							
획	(5) 공사착공 예정일	2		0000년 0	0월	(1) 공사준공예정일		정일	0000년 00월		00월
인 허	건축	농지전-	용 <u></u>	산지전용	토지형 변경		구거목적 외 사용	하천점용	+ 도로점	용	
가 사 항											
	중소기업창	원지원법	ス]34조 제1형	항 및 동	법기	시행규칙 제	16조의 구	7정에 의히	-여	
위와	같이 사전	협의신청	서·	를 작성하여	계출하	·오	니 검토하಼	후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00월 00일										

신청인 (주)

대표 〇 〇 〇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1. 사업계획서1부
- 2. 환경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요할 시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첨부
- 3.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별지 제1의3호 서식] <개정 2014.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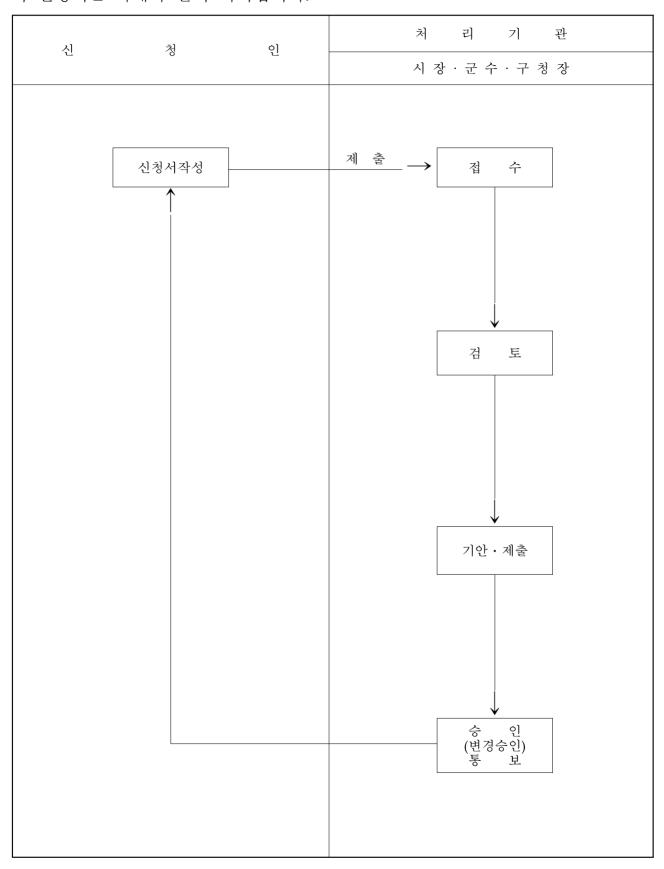
		사업	계획승	인사항 변	[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회 사	명					(전화 :	:)			
신	③대 표 자 -	 성 명				③대표자						
청						(법인등	록번호)	[()			
인	⑤대표자주 (법인소재											
	⑩공 장 소 :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7	足	대지	m²		⑫건	물		m²			
기 기 획	⑬업종(분류	번호)				④종 업	원 수					
7	⑤공사착공여]정일				⑤공사 준공 예정일						
변 경 내	구분	ğ	기사명	대표자성명		표자 생년월일 인등록번호)	업종 (분류번호))	생산예정품목			
	변경전											
용	변경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저	∦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					
시	장 · 군수 · 구>	청장 귀	5}-									
	ク 수료											
첨부서류 :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3. 기타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없 음			

L 큰^]	세2호 시크]					(앞 면)				
	공장설립 시		 승 인 변경승인] 신청서		지 (교 년) 처리기간 20 일				
	①회 사 명				-록증번호	20 권				
신	③대 표 자 성 명			④대표자						
(건	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	연월 일					
청	⑦주 소(법인은 소재지)			⑧회 사	자 산					
റി	⑨공 장 소 재 지				(전화변					
인	⑩규 모	대지	m²		건물	m²				
	⑪업종(분류번호)			①종 업	원 수					
	⑤사 업계획유형	□ 공장신설		□ 공장증설		공장이전				
	⑭공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				
	⑤ 규 모	대지	m²		건물	m²				
	업종(분류번호)			종 업	원 수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위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천부서류 없 음										
2. 3.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28283-06411 민 93. 4. 7.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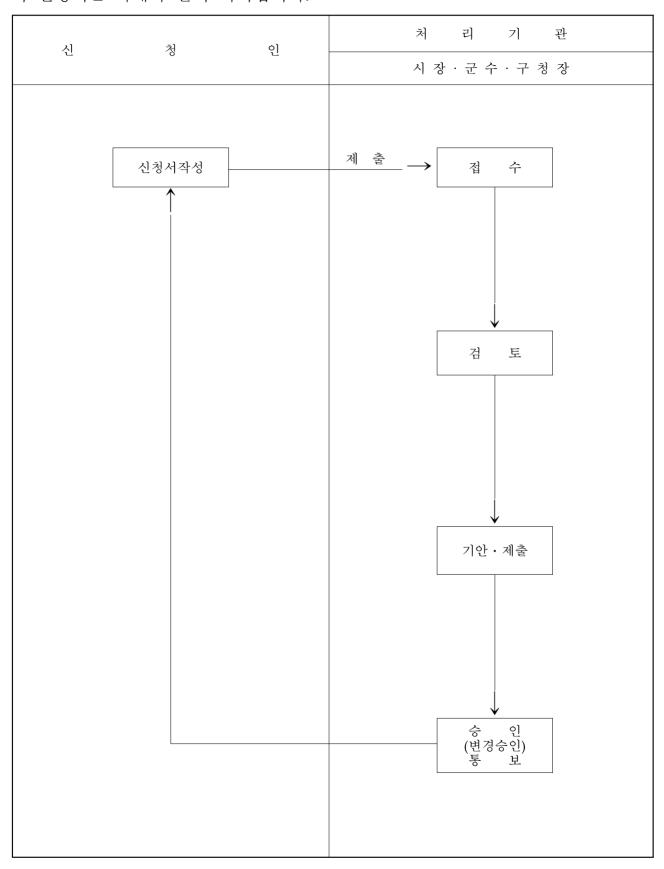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7	공동사업계획	· □ 승 인] □ 변경승인	신 청 서	처리기간 2 0 일				
 구 분	 신 청 자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u>'</u> 회사명	1 7 7	00/11/11/11/11	00/111/11 역시	00/11/11/11/11/11				
사업자등록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년월일								
주 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회사자산								
업종(분류번호)								
종업원수	-> .>	->						
사업계획유형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 창 업 □ 공장신설 □ 공장증설 □ 공장이전				
규 모	대지 m²	대지 m²	대지 m²	대지 m²				
고기라고세기이	건물 m²	건물 m²	건물 m²	건물 m²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기업활동규 법 제33조에		(변경승인)을 위하여	교 교육에 의하여 중소 전 등 전 분임과 같이 사업 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01)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 I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i>'</i>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 I				
시장・군수・구청	청장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	업	계	왹	서	
		업 체 명 :			

2815-282-011241 민 95. 10. 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차 례

- 1. 사업개요
- 2. 생산제품 소개
- 3. 공장건축계획
- 4. 생산공정도
- 5. 생산설비 명세서
- 6. 배출시설 명세서
-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_1		. 1	1	П	-71
	ŀ.	\wedge	- 업	목	쇡

나. 사업의 기대효과

- ① 고용효과
- ② 소득증대 효과
-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 ④ 수출증대효과
- ⑤ 기 타

다. 투자계획

	투자기	계획	자금조달계획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천원		
시설	공장건축비	천원	차입자본	천원		
자금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천원		
	기타공사비	천원		천원		
	운전자금	천원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玛	표준산업 분류번호 (5단위)	77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 생 산 품	-						
② 기타 생산	<u> </u>						

○ 제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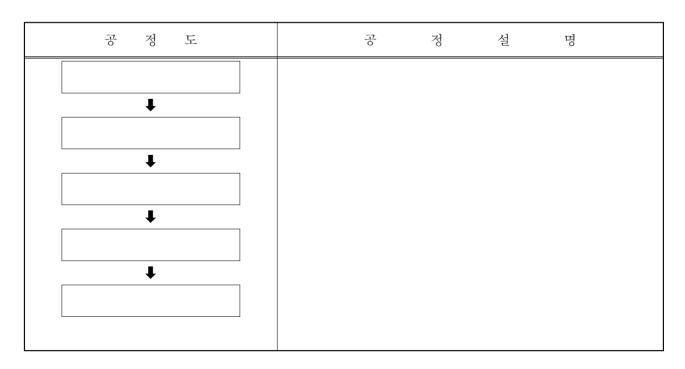
○ 세품설명								
□ 제품명:□ 용 도: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 가동시간 : 1일 8시간□ 제품의 특성	(월 일 / 년 일) 기준	2						
□ 기 타								

3. 공장건축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계	비고
① 설 계 용	- 역						
② 부	지	m²	m²	m²	m²	m²	
③ 조 성 공	- 사	m²	m²	m²	m²	m²	
④ 공장건물	건 축	m²	m²	m²	m²	m²	
⑤ 부 대 건	물	m²	m²	m²	m²	m²	
- 사 무	실	m²	m²	m²	m²	m²	
- 실 험	실	m²	m²	m²	m²	m²	
- 창	고	m²	m²	m²	m²	m²	
- 식	당	m²	m²	m²	m²	m²	
- 기 숙	사	m ²	m²	m²	m²	m²	
- 7]	타	m²	m²	m²	m²	m²	
합 7	ᅨ	m²	m²	m²	m²	m²	

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수 량	비고

6. 배출시설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kW·m³)	수 량	오염물질 종류	특정유해물질 발생여·부	비고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소음·진동분야						
라. 폐기물						

※기재요령:「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용 수(톤/일)		전 력(kW/일)		연 료 (톤 /일)		일)		
생활	용수	공업	용수	이 비고 러	자가발전	7) O	가 스	7) El
상수도	지하수	상수도	지하수	일반신덕	사가발신	경 유	パム	기타
								_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소재지	ગ મો	기묘 지적면		H 기무	지 번 지목	기 비 기묘			입 면 적 (m²)		용도지역	소유자	ען ד
교세시	시 빈	시학	(m²)	계	공장용지	진입도로	· 중도시의	(성명)	비고				
합 계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공장부지면적 : m² ○ 제조시설면적 : m² ○ 부대시설면적 : m²	
2.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 시업의 종류 ○ 허가받고자 하는 면적 : m² ○ 수량 ○ 방법 ○ 기간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m² ○ 해제 받고자 하는면적 : m²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점・사용의 위치 ○ 점・사용의 목적 ○ 점용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 허가조건 ○ 점・사용 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5.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사내용 공사기간 허가조건 총 공사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6.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m²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서류
7.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	하천의 명칭위 치공사개요공사기간	○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8.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 하천명 ○ 점용(행위) 위치 ○ 점용(행위) 면적 : m² ○ 점용(행위) 목적 ○ 점용(행위) 기간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의 서류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 기재)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9.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전용면적 : m² ○ 부산물(벌채수종, 굴취수종, 토석) 생산현황 ○ 전용기간 ○ 전용목적 	○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0.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일시사용 산지면적 : m² ○ 일시사용 목적 ○ 일시사용 기간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서류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서류
11.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번호, 일자 - 소재지 ○ 변경신청 사항 - 변경 전·후 면적 - 용도(목적) - 명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서류
12.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지적 : m² ○ 벌채・굴취・채취 구역 면적 ○ 벌채 수종 및 수량 ○ 벌채・굴취 기간 ○ 작업방법 	 (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13.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구 간 : ○ 연 장 : ○ 폭 원 :	○ 사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서류
14.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사업시행지의 위치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사업면적: m² 시행 방법 및 기간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기반시설계획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설정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서류
18.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제1항)	○ 전용 농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서류
19.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제1항)	○ 전용 농지면적 : m² ○ 사업기간	ㅇ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서류
20.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제40조제1항)	○ 용도변경 신청내역(소재지, 변경면적, 용도, 사유)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서류
21.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초지법 제23조)	소재지초지 이용현황전용계획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22.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	○ 재산 소재지, 지목 ○ 공부면적 : m² ○ 신청면적 : m²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3.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 재산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신청면적 : m²	
24.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38조제1항)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굴착기간 ○ 공작물(시설) 구조 ○ 공사실시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서류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사업의 개요 ○ 평가 대상지역 범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 환경보전방안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2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사용시설(시설명, 위치, 사용면적)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27.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사망자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개장장소 개장방법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28.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o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	
29.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행정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38조제1항)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공작물(시설) 구조 공사실시 방법 공사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서류
2.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	점용의 목적장소 및 면적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
3.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배수설비설계서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서류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규모 또는 처리용량처리시설의 구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서류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ㅇ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6.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업자 및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공사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7.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설치자 ○ 설치장소 ○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8.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인 여가 설차병		구미지규
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33조)	 설치, 가동 개시예정일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수질오염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서류
10.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가동개시예정일○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준공예정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내용○ 퇴비저장시설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서류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처분시설명 시설규격 처분대상 폐기물 종류 처분 예상량(톤/연) 방지시설명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서류
13.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제52조 및 54조)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서류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서류
15.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저장소 종류, 동수종류별 허가 저장량저장소 위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16.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용도지구 등) ○ 건축물 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명칭 등) ○ 하수처리시설 ○ 주차장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17.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용도지구 등) ○ 건축물 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명칭 등) ○ 하수처리시설 ○ 주차장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18.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2항)	 대지현황(위치, 면적 등) 건축물 개요(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동별개요(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9. 공작물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83조제1항)	 대지조건(위치, 지번, 지구 등) 설계자 공사 시공자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오염물질의 종류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주요 내용 및 특성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서류
21.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2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ㅇ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서류
23.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소재지 ○ 고압가스의 종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1호서식)
24. 용기, 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소재지제조하려는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 종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4호서식)
25.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사용 목적・방법월간 사용량 및 수용 정원안전관리자 선임 명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26.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획사항, 작성자, 평가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서류
27.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	ㅇ 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의 서류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설치완료일 사용예정일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서류
2.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ㅇ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3.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시공장소소방시설의 종류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공사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서류
4.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설치자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 일자 및 번호 완공연월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서류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처분시설명시설규격처분 예상량(톤/연)방지시설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6.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설치명세○ 가동개시예정일○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측정기기 부착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서류
7.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시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설치명세 ○ 가동개시예정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서류
8.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9.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 영업의 종류○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제품명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0.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시공자(상호, 소재지 등)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개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서류
11.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와 기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사업소재지사업 등의 종류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검사 희망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서류
12.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사업의 종류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사업소 소재지검사 희망 연월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서류
13.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사무소 소재지 ○ 가스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서류
14.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 제2항)	 ○ 개발행위 준공검사 - 신청사항, 준공면적, 도로, 급수 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사업명칭, 목적, 위치, 사업면적, 시행방법, 토지이용현환 등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
15.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 토지 이동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5호 서식]

창 업 사 업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 종	소 재 지

나. 승인사항

다.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 (2)
-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1)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 (3) <삭제 2005.11.4>
- (4) <삭제 2005.11.4>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직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의2호 서식]

공 장 설 립 사 업 계 획 승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업 종	소 재 지

나. 승인사항

※ 동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대하여 승인한 사항임

다.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 (2)
-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 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1) 승인을 받은 사항은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 (3) <삭제 2005.11.4>
- (4) <삭제 2005.11.4>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직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의3호 서식]

공동사업계획승인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동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 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업체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 재 지	비고
신 청 자				
공동사업 계 획 자				

※ 주 : 비고란에 "창업승인"과 "공장설립승인"을 구분하여 표기

나. 승인사항

다. 공동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된 것으로 처리되는 절차 및 조건

- (1) ○○법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조건)
- (2)
- (3)

라. 승인조건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마. 이행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1) 공동사업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신청자가 변경 승인절 차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개별사업계획 부문의 승인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 개별사업자(공동사업계획자)가 별개로 변경승인을 받아 야 함
- (2) 공동사업계획 부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동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
- (3) <삭제 2005.11.4>

바. 기타 이행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직 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창업사업계획승인대장

일련	업 체 명	업 종	기업형태	대표자	기치비중	위치	접수	사업계획	사업계	획서상
번호	합세 명	월 중	(법인,개인)	내효자	전화번호	T 4	일자	승인조건	착공일	예정일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보고서(년 반기) (시·도시·군·구)

1. 상담실적

(단위 : 건)

상담유 형 시·군·구	창업입지	자 금	세 ~	에 업	종	수출등 판 매	기 타	당반기	누	계
계(시·도)										

* 작 성 요 령

1. 창업입지 : 창업입지와 관련된 절차 등 상담건수

2. 자 금 : 창업자금(투자, 융자 포함)에 대한 상담건수

3. 기 타 : 창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타당성 분석 등의 정보제공건수 기재

4. 누 계 : '86. 4월이후 누계

2815-282-01541 보 '93. 12. 16 승인 $210\text{mm} \times 297\text{mm}$

(신문용지 54g/m²)

2. 창업사업계획 처리현황

접수·처리	접	수				처	리			
			승인		불승인		처리중		취소	
시·군·구별	당반기	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당반기	누계
계										
(시·도)										

- * 작성요령 : 접수 승인(변경승인 제외) 건수만 기재, 누계는 86. 4월 이후 누계
- 3. 창업사업계획승인 업체현황

승인내용 시·군·구	업체명	업종	기업형태	사전협의 여부

- * 작성요령
 - 1. 업종: "5. 중소제조업 업체현황"의 ④ ~ ⑬으로 구분
 -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 3. 법 제21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만 표
- 4.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및 취소 현황

내용 시·군·구	업체명	업종	기업형태	처리구분 불승인 취소		불승인 또는 취소 사유

- * 작성요령
 - 1.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구분
 - 2. 기업형태 :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
 - 3. 처리구분 : 해당란에 ○표

5. 중소제조업 업체현황

	구 분	전 업	반 기 체		체	설 수	폐 업	체	업 수	1	반 기 체	말 수
입	① 공업단지											
지	② 공장설립가능 용도지역 내											
별	③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설립											
	계											
	④ 음식료품											
업	⑤ 섬유ㆍ의복ㆍ가죽ㆍ신발											
	⑥ 목재, 가구											
	⑦ 종이, 펄프, 인쇄											
종	⑧ 화학, 고무, 플라스틱											
5	⑨ 비금속											
	⑩ 1차금속											
	⑪ 조립금속, 기계, 장비											
별	② 자동차, 운송장비(부품)											
	⑤ 기 타											
	계											
사	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수											

* 작성요령

ㅇ 작성대상

-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
- 시·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은 등록된 공장수에 포함하지 않고()로 별도 처리
- · 1개 업체가 2이상의 공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구 분

- ① 공업단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등 계획입지내 공장
- ② 공장설립가능용도지역내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공장설치가 허용되어 설립된 공장
- ③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설립 : 각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업종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설립된 공장
- ④ 음식료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15에 해당되는 업종
- ⑤ 섬유·의복·가죽·신발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17,18,19에 해당되는 업종
- ⑥ 목재·가구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0,36에 해당되는 업종
- ⑦ 종이·펄프·인쇄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1,22에 해당되는 업종
- ⑧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3,24,25에 해당되는 업종
- 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6에 해당되는 업종
- ⑩ 제1차 금속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7에 해당되는 업종
- ① 조립금속·기계·장지·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28,29에 해당되는 업종
- ② 자동차, 운송장비(부품)제조업 : 한국표준사업분류 34,35에 해당되는 업종
- ③ 기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0,31,32,33,37에 해당되는 업종